

# 14 근로시간 단축 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.

## 근로시간 단축 인정이란?

●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'노동시간 단축 확인서'를 첨부하여 재해예방활동 신청 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해 드립니다.

## 근로시간 단축 적용요건은?

- 적용요건(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)
  - » 법정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
  - »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
  - »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한 노·사간 협약을 제·개정할 것
  - » 노동시간 조기단축 후 실제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 이하일 것



## 근로시간 단축 인정절차는?



- (신청방법)
  - »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: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“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” 제출
  - »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: 공단에 “노동시간 단축 확인서”를 첨부하여 “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” 제출

근로시간 단축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은  
**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**  
**(052-703-0720)로 문의**



## 근로시간 단축 인정 시 혜택은?

- 재해예방활동 인정 유효기간(2021.6.30.까지) 동안 산재보험료율 10% 인하

#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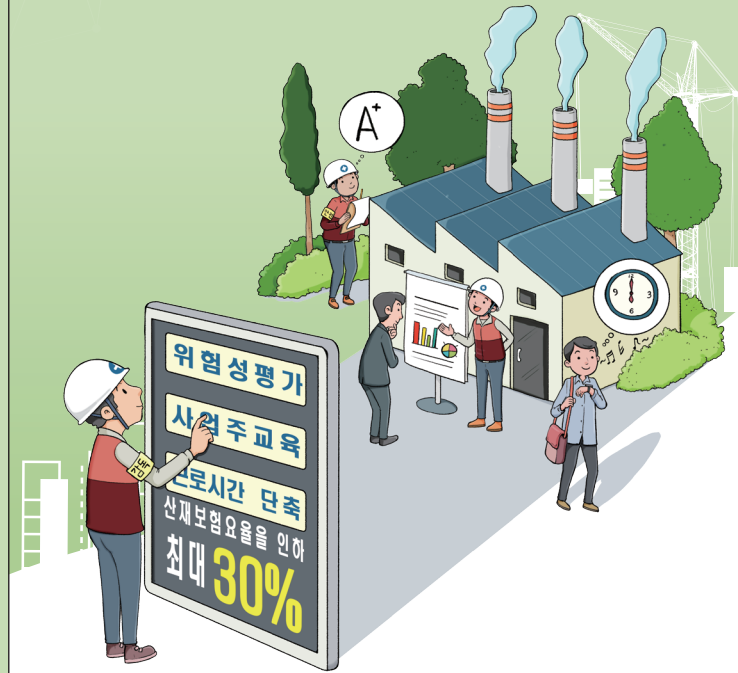


일선기관명	관할구역	위험성평가 업무 담당자	위험성평가교육 업무 담당자
서울광역시본부	서울특별시 강남구·서초구·성동구·광진구·송파구·강동구·영등포구·강서구·양천구·관악구·구로구·금천구 및 동작구	02-6711-2897	02-6711-2913
서울특별시본부	서울특별시 중구·종로구·동대문구·용산구·마포구·서대문구·은평구·성북구·도봉구·강북구·중랑구 및 노원구	02-3783-8322	02-3783-8315
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·원주시·홍천군·인제군·화천군·양구군 및 횡성군, 경기도 가평군	033-815-1059	033-815-1058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·속초시·동해시·태백시·삼척시·양양군·고성군·영월군·정선군 및 평창군	033-820-2513	033-820-2552
부산광역시본부	부산광역시	051-520-0515	051-520-0556
울산광역시본부	울산광역시	052-226-0549	052-226-0515
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(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 제외)	055-269-0517	055-269-0513
경남동부지사	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·양산시	055-371-7511	055-371-7502
광주광역시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·화순군·곡성군·구례군·담양군·장성군·영광군 및 함평군	062-949-8743	062-949-8714
전북지역본부	전라북도 전주시·남원시·정읍시·장수군·임실군·순창군·완주군·진안군 및 무주군	063-240-8544	063-240-8523
전북서부지사	전라북도 익산시·김제시·군산시·부안군 및 고창군	063-460-3613	063-460-3626
전남지역본부	전라남도 목포시·무안군·영암군·강진군·완도군·해남군·장흥군·진도군 및 신안군	061-288-8734	061-288-8723
전남동부지사	전라남도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·고흥군 및 보성군	061-689-4951	061-689-4914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97-7517	064-797-7504
인천광역시본부	인천광역시	032-510-0548	032-510-0647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·동두천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안주시·포천시·고양시·파주시·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	031-828-1953	031-828-1944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	032-680-6543	032-680-6551
경기지역본부	경기도 수원시·용인시·화성시·평택시·오산시·안성시	031-259-7137	031-259-7265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안산시 및 시흥시	031-481-7517	031-481-7556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·하남시·이천시·광주시·여주시 및 양평군	031-785-3327	031-785-3340
대구광역시본부	대구광역시 중구·동구·북구·수성구, 경상북도 영천시·경산시 및 청도군, 군위군	053-609-0546	053-609-0576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서구·남구·달서구·달성군, 경상북도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)·고령군 및 성주군	053-650-6854	053-650-6814
경북지역본부	경상북도 구미시·김천시·영주시·상주시·문경시·안동시·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·봉화군·예천군·의성군·영양군 및 청송군	054-478-8014	054-478-8053
경북동부지사	경상북도 포항시·경주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	054-271-2064	054-271-2014
대전세종광역시본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금산군	042-620-5652	042-620-5672
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	043-230-7125	043-230-7145
충남지역본부	충청남도 천안시·아산시·당진시·보령시·서산시 및 예산군·홍성군·서천군·부여군·청양군·태안군	041-570-3435	041-570-3407



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 
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

# 산재예방 요율제 안내



## 11 산재예방요율제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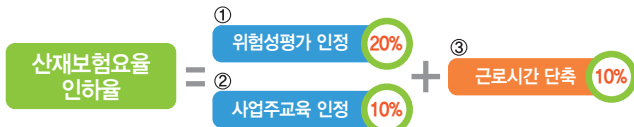
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(위험성평가, 사업주교육, 근로시간 단축)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.

### 적용대상

-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  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(이하 "징수법")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
  - 보험료 일괄징수를 받는 사업장(일괄사업장)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

### 적용방법

- ①「위험성평가」, ②「사업주교육」 또는 ③「근로시간 단축」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요율을 적용하며,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
  - ①과 ②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적용
  - ③과 ① 또는 ②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③의 인하율을 합산



- 관련근거
  - 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(산재예방요율의 적용)
  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26호(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)

### 인정유효기간

- 위험성평가 인정 : 3년, 사업주교육 인정 : 1년, 근로시간 단축 : 2021. 6. 30.까지
  - 산재보험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(일괄계산)

### 업무처리절차



### 업무처리기간

- 안전보건공단 : 재해예방활동 인정 여부 결정
- 근로복지공단 :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
- 고용노동부 :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여부 결정

## 1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.

###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?

-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현장방문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
###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는?



- (컨설팅)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(작업)중 일부 또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포인트를 중점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. (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)
  - 공단에 "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" 제출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(<http://kras.kosha.or.kr>)에서 신청
- (교육)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사업주 교육 : 공단에 "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지원신청서" 제출 또는 안전보건교육포털(<http://www.koshats.or.kr>)에서 신청
  - 평가담당자 교육 :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에 "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 교육 지원신청서" 제출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에서 신청
- (인정 신청) "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"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같습니다.
  - 공단에 "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" 제출 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에서 신청

###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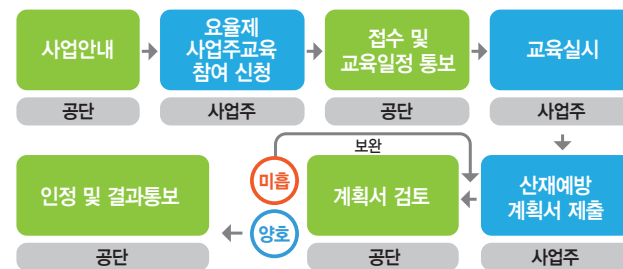
- 산재보험료율 20% 인하(50명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만 해당)
-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
- KOSHA-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(50인 미만) 및 실태심사비 면제
-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, 보증요율 0.2%p 감면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기술성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~100억)

## 13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이렇게 받으세요.

###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?

-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수립·제출한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을 공단에서 검토 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#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절차는?



- (교육대상) 사업주 본인(법인은 대표이사)
  - 교육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
- (교육기관)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교육센터 및 교육담당부서(무료)
- (교육시간) 4시간
- (교육내용) 안전의식 제고,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, 위험성평가 및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(실습) 등
- (신청방법) 공단에 "재해예방활동 신청서" 제출 또는 안전보건교육포털(<http://www.koshats.or.kr>)에서 신청

상시근로자수 증명 서류(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)

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	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
다음 서류 중 택 1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세무서 제출자료)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(수정) 신고서 사본	다음 서류 중 택 1 ① 고용-산재보험 성립신고(가입신청서)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

※ 상시근로자수 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

### 사업주교육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?

-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(1년) 동안 산재보험료율 10% 인하
-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(1년) 동안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